

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1년 6월 7일

○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1일

3. 제안이유

○ 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2000.12.29)으로 제34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업무가 도지사에게 권한위임(2001. 7. 1)됨에 따라,

○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 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○ 석유판매업(부생연료유판매소) 등록신청 수수료 신설
-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신청 : 1건당 20,000원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개정(2000. 12. 29)됨에 따라 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에 관한 업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수수료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

주요내용으로는 석유제품의 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 등록 신청 시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고 수수료는 1건당 20,000원으로 하는 것임.

⇒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수수료의 산출기초를 보면 등록시설의 현지확인에 따른 소요 비용 등이 계상되지 않고 있어 수수료 산정의 타당성과

석유사업법시행령 개정(2000. 12. 29) 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고 시행일(2001. 7. 1)에 임박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유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며,

석유판매업의 위치 및 규모 등의 변경등록 시에는 신규 등록과 동일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

석유사업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,

향후 동 법 개정 등의 건의를 통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